

# 창업지원센터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창업지원센터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의 학생·교원·직원·연구원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센터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창업자 발굴·육성 프로그램 운영
2. 창업 교육과정 개발
3. 교내 실험실 창업 지원
4.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

**제3조(소관)** 센터는 산학협력단 산하에 둔다.

**제4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.

-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센터의 운영 효율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조(조직)** 센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둔다.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에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 1. 당연직 위원: 센터장, 산학협력단장, 공과대학장, 항공·경영대학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
  2. 임명직 위원: 전임교원 2명,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담당 직원 2명 내외
-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명직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사무국장이 된다.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한다.

**제7조(재정 및 회계)** ① 센터의 재정은 본교 교비 및 산학협력단 예산, 창업지원 관련 외부 사업비와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회계처리는 본교와 산학협력단의 재무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**제8조(기타)**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